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7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('18. 12. 4.)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(안 제6조)
- 나.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위임사항을 반영(안 제3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(대통령령 제29324호)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 (2019. 1. 24. ~ 2. 13.) 결과: 의견없음
- 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재산의 증감 및 현황”을 “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”으로 하며,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)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,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0조의 제목 “대부료의 감면”을 “대부료 등의 감면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.

1.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
3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(2019년 6월 5일)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재산의 증감 및 현황) 영 제 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6조(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)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,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30조(대부료의 감면)</p> <p>①~④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</p> <p>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.</p> <p>1.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</p> <p>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</p>

3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
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
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
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
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①공유재산의 증감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 ②미취업자 창업 공간 및 마을기업 등이 공유재산 사용 시 사용(대부)료를 감경해 줄 수 있는 법령 위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

4. 작성자 : 자산관리과 임 만 규 (2133-3284)